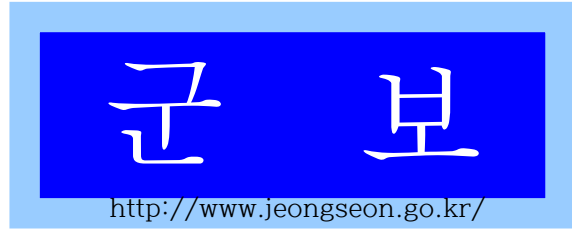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510호 2019. 12. 4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9-1239호 정선(정선 향교옆) 군계획시설(소로3-13호선) 실시계획 공람 · 공고.....2
- 정선군 공고 제2019-1240호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주차장 12-정선 향교옆) 실시계획 공람 · 공고.....5
- 정선군 공고 제2019-1261호 정선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· 공고.....7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9-1239호

정선(정선 향교옆) 군계획시설(소로3-13호선) 실시계획 공람·공고

1. 강원도 고시 제134호(1985. 12. 14.)로 최초 결정된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소로3-13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·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1월 29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-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정선 향교옆) 군계획시설(소로3-13호선) 사업
- 2) 명 칭 : 정선(정선 향교옆) 군계획시설(소로3-13호선) 개설공사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	비 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기시행	금회시행	
도로	소로 3-13호선	L=113.0m, B=6.0 ~ 10m	-	L=36.5m, B=6.0m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0.12.31.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19. 11. 29. ~ 2019. 12. 13.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 (☎033-560-2468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●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
1	정선읍 봉양리	266-1	도	17,790	81	-	국(건설부)	-	-	-
2	정선읍 봉양리	374-9	대	7	4	-	정선군	-	-	-
3	정선읍 봉양리	385-4	대	212	40	봉양리 385	정선향교	-	-	-
4	정선읍 봉양리	385-5	대	128	78	봉양리 385	정선향교	-	-	-
5	정선읍 봉양리	388-2	대	18	13	-	국 (기획재정부)	-	-	-
계		5필지		18,155	216					

● 지장물 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물건 의 종류	구조 및 규격	단위	수량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
1	정선읍 봉양리	385-5	주택	블럭기와	㎡	95.0	정선읍 비봉로 61-2	배영대	-	-	-
2	정선읍 봉양리	385-5	주택	목조스레트	㎡	43.0			-	-	-
			담장	블록 H=1.6m	m	45.0			-	-	-
3	정선읍 봉양리	385-4	주택	경량철골조 (조립식)	㎡	64.0			-	-	-

정선군 공고 제2019-1240호

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주차장 12-정선 향교옆) 실시계획 공람·공고

1. 정선군 고시 제2016-117호(2016. 11. 04))로 최초 결정된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주차장 12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·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1월 29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5-4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주차장 12-정선 향교옆) 사업
- 2) 명 칭 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주차장 12-정선 향교옆) 조성공사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	비 고
	세부시설명	면 적	기시행	금회시행	
도로	주차장 12	A=1,343m ²	-	A=209m ²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0.12.31.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19. 11. 29.~2019. 12. 13.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 (☎033-560-2468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◎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
1	정선읍 봉양리	266-4	대	66	4		국 (기획재정 부)	-	-	-
2	정선읍 봉양리	266-6	도	140	1		국 (국토교통 부)	-	-	-
3	정선읍 봉양리	381-2	도	83	3		정선군	-	-	-
4	정선읍 봉양리	385-1	도	132	29		국 (국토교통 부)	-	-	-
5	정선읍 봉양리	388-2	대	212	172	봉양리 385	정선향교	-	-	-
계		5필지		633	209					

정선군 공고 제2019-1261호

**정선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
허용기준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**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 및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28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정 선 군 수

1. 대상문화재

연번	지정종별		문화재명	소재지
1	천연기념물	제556호	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	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외
2	천연기념물	제557호	정선 화암동굴	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화암리 산248 외

2. 취지

-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,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작성내용 : 붙임의 허용기준 작성안 참고

4. 공고기간 : 2019. 12. 02 ~ 2019. 12. 21.(20일간)

5.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업무처리

-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(개발 및 건축행위 등) :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

-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: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

6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공고기간 만료일(2019년 12월 21일 18:00까지)
 - 제출방법 : 서면제출(붙임 의견서 이용)
 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, 팩스, 우편접수 등
 - 성명(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 - 제출장소
 - 방문 : 정선군청 문화관광과
 - 우편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※ 문의처 :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(☎033-560-2564)

- 붙임 1.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안 1부.
2. 의견서 서식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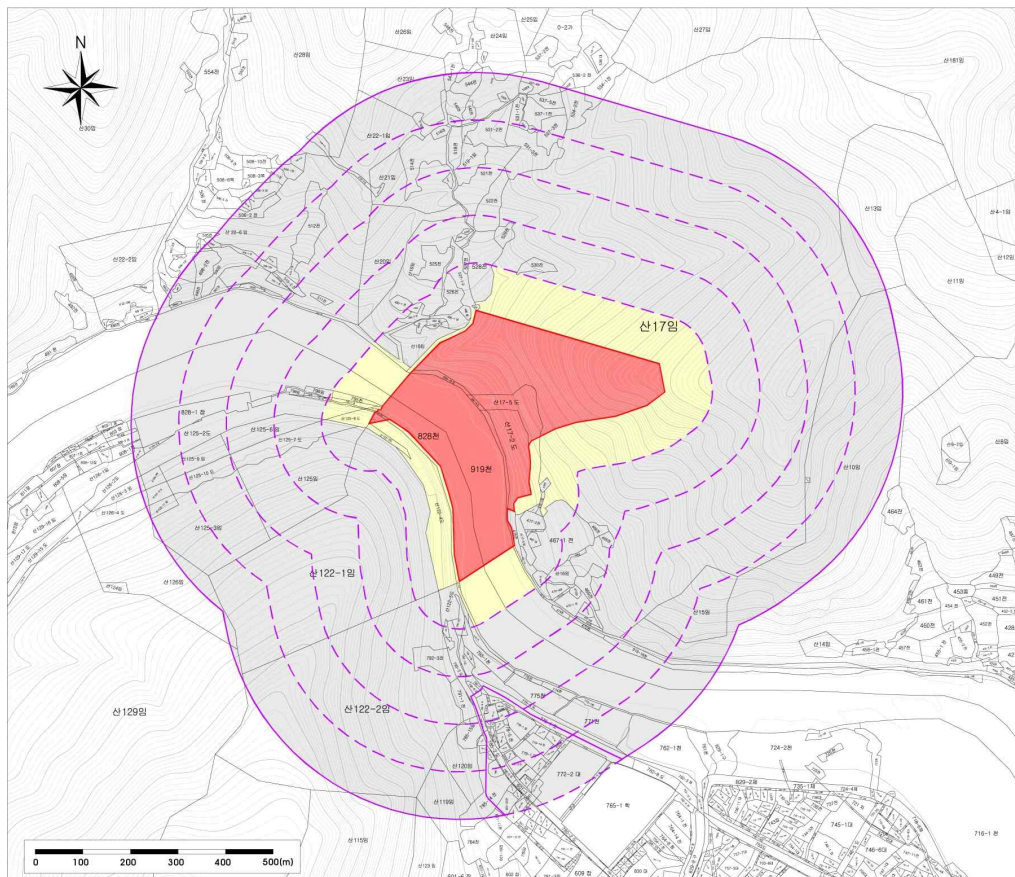
<붙임 1>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

■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(천연기념물 제556호)

▼ 허용기준안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이상)
1구역	○개별심의	
2구역	○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 사항	①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채축을 허용함. ②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③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수질오염(물환경보전법), 토양오염(토양환경보전법), 위험물제조·저장·처리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, 동물 관련시설[축사(견사 포함), 도축장(개 포함), 도계장 등 도살 시설]과 화학물질·열·빛을 발생하는 시설등은 개별 심의함. ④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. ⑤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, 표본조사, 시굴조사,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시함. -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 출토 시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. ⑥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 제556호

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

강원도 정선군 정선읍
봉양리 919 외

범 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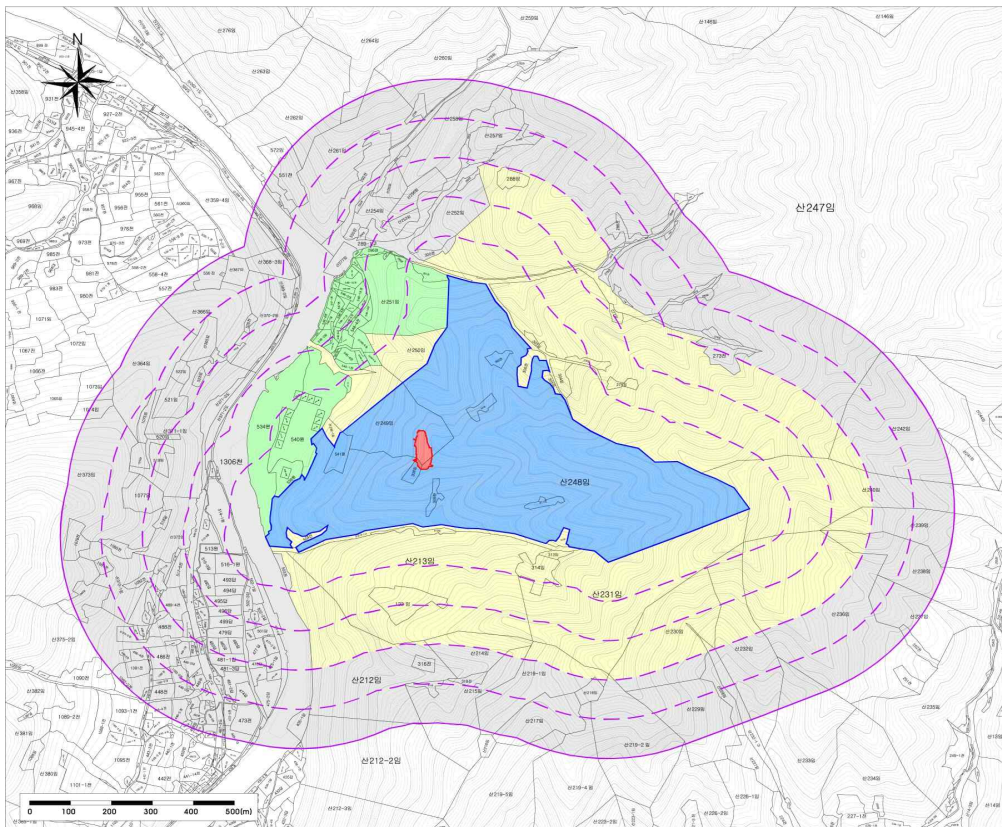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개별심의	
2구역	○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 사항	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채축을 허용함. ②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③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수질오염(물환경보전법), 토양오염(토양환경보전법), 위험물제조·저장·처리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, 동물 관련시설[축사(견사 포함), 도축장(개 포함), 도계장 등 도살 시설]과 화학물질·열·빛을 발생하는 시설등은 개별 심의함. ④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. ⑤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, 표본조사, 시굴조사,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시함. -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 출토 시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. ⑥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

축 척 1 : 7,000

■ 정선 화암동굴(천연기념물 제557호)

▼ 허용기준안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이상)
1구역	◦개별심의	
2구역	◦최고높이 11m이하	◦최고높이 15m이하
3구역	◦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 사항	①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②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④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수질오염(물환경보전법), 토양오염(토양환경보전법), 위험물제조·저장·처리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), 분료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, 동물 관련시설[축사(견사 포함), 도축장(개 포함), 도계장 등 도살 시설]과 화학물질·열·빛을 발생하는 시설등은 개별 심의함. ⑤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. ⑥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) ⑦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, 표본조사, 시굴조사,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시함. -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 출토 시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. ⑧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⑨ 3구역의 경우 ④번, ⑦번, ⑧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.	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천연기념물 제557호

정선 화암동굴

강원도 정선군 화암면

화암리 산248 외

범 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
허용기준	
구분	평지붕
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◦개별심의
2구역	◦최고높이 11m이하
3구역	◦최고높이 15m이하
3구역	◦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공통 사항	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②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④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수질오염(물환경보전법), 토양오염(토양환경보전법), 위험물제조·저장·처리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), 분료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, 동물 관련시설[축사(견사 포함), 도축장(개 포함), 도계장 등 도살 시설]과 화학물질·열·빛을 발생하는 시설등은 개별 심의함. ⑤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⑥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.) ⑦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, 표본조사, 시굴조사,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)를 실시함. -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 출토 시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. ⑧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⑨ 3구역의 경우 ④번, ⑦번, ⑧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.

축 척 1 : 8,000

<붙임 2>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

☐ 의견 제출자

- 주 소 :
- 성 명(법인, 단체명) :
-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☐ 의견내용

◦ 의 견 사 항

-

상기 본인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9. . .

의견제출자 : (인)

정선군수 귀하